법인의 권리능력 / 대표기관의 권한 逾越, 남용행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I.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가의 문제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정관上의 목적에 의한 제한 (제34조) 98다2488, 65다854

II. 대표기관 행위의 대표성 부인

대표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상대방의 선의, 악의 불문
(판례, 91다24564)
상법상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 상법 제209조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제64조) – 특별대리인
대표권 남용의 경우 97다18059
심리유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
신의칙설 (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었던 경우는 무효)
대표권 부인 (대표권에 내재적 제약이 있다는 견해,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유사한 해결책
모색)
내부적 절차(이사회 결의 등)의 흠결?

III.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2다49300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제35조1항, 법인의 자기책임) /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불법행위? (법인의 사용
자책임)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결과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과 법인이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5조 1항 단서)
나머지 대표자들의 연대책임 (35조2항)